- ③ '변경의 종류'란에는 변경대상 취급시설에 관련하여 (개) 시설규모 변경, (내) 시설위치 변경, (대) 시설 재질 변경, (대) 취급물질 변경, (대) 기타 중 한 가지 이상의 종류를 기재한다. 2가지 이상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변경의 종류를 모두 기재하고, '(대) 기타'라고 기재할 경우에는 구체적인 변경사항을 기재한다.
- ④ '변경내용'란에는 변경의 종류별로 변경전의 사항과 변경후의 사항을 기재한다.
- ⑤ '후속조치'란에는 (개 해당 변경사실로 인해 '유해화학물질 영업변경신고'를 한 경우 '변경신고'한 사실과 변경신고일자를 기재하고, (내) '시범생산계획서'를 작성·제출한 경우 '변경신고'한 사실과 변경신고 일자, 시범생산기간 및 원상복귀 등의 사항을 기재한다.
- ⑥ '담당자'란에는 변경대상 취급시설의 관리자를 기재한다.
- ⑦ '확인자(일자)'란에는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담당자를 '확인자'로 기재하고, 장외영향평가서의 기본 평가정보가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최신화된 것을 확인한 일자를 기재한다.

<변경내역서 작성 예시>

번호	일자	변경대상 취급시설의 명칭	변경의 종류	변경 내용 (변경전→변경후)	후속조치	담당자	확인자(일자)	비고
	'17.1.2		시설규모 변경	20톤 → 15톤	_	ΔΔΔ	홍길동(1.10)	
	'17.2.5	$\Diamond\Diamond\Diamond$	시설위치 변경	도면 0000번 참조	변경신고('17.2.2 0)	ΔΔΔ	홍길동(2.5)	
	'17.4.5	$\Diamond\Diamond\Diamond\Diamond\Diamond\Diamond$	시설 재질 변경	00 → 00	-	000	홍길동(4.10)	
	'17.5.10 '17.7.1		취급물질 변경	황산30% → 황산 15% 황산30% → 황산 15%(복귀)	시범생산 신고일자: '17.5.9 지속기간: 5.10~6.30	000	홍길동(7.2)	

●환경부고시제2017-247호

2018년도 전기 · 전자제품 인구 1인당 재활용목표량

「전기·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」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에 따라 2018년도 전기·전자제품 인구 1인당 재활용목표량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7년 12월 28일

환경부장관

전기 · 전자제품 인구 1인당 재활용목표량

대 상	2018년
27개 품목	
(전기·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	6.0kg/인
법률 시행령 별표3)	

이 고시는 201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.